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신광식* · 김동현**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in the real estate assets hel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Kwang-Shig Shin* · Dong-Hyun Kim**

요 약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 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military and local authorities to set up military reserves has often caused friction. Therefore,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around the Act's real estate management practices that can be was to prepare. As a result, the first government to develop a plan to train real estate professionals are actively involved with the Advisory Board shall be utilized to configure. Utilizing the second army of real estate assets for future urban development should be. The third section, research on military protection should be continued. Finally, border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s to propose the measures that should be carried out.

키워드

Military bases, military facilities,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 military real estate assets, military urban future
군사 기지, 군사 시설,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 군 부동산 자산, 미래의 군사도시

1. 서 론

1.1. 문제제기

최근 군부대와 지역주민 사이에 내재된 불만이 잠재되어 있었으나 점차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즉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제약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 입장에서 안보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모색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국방부에서도 외면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해결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국민대학교 부동산학과(skdsdc@daum.net)
접수일자 : 2011. 11. 15

** 교신저자 : 청암대학교 부동산학과(dhkim2010@daum.net)
심사(수정)일자 : 2011. 12. 05

게재확정일자 : 2011. 12. 22

1.2. 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선행연구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연구범위는 첫째 국방부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과 지목별 토지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군사시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군보협의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주민들과의 마찰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 원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이 방대하기에 육군 보유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효율적인 군 보유 부동산 자산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군사시설 관리법제의 비교

2.1. 외국의 군사시설 관리법제

국가에서 부대이전 소요 비용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보상을 책임지고 있었다. 일본은 방위시설청에서 개발을 지원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터키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지원하였다. 부동산을 획득하면 전문조직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특히 미국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과의 갈등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었다.

2.2. 한국의 군사시설 관리법제

2.2.1. 관련법 체계

표 1. 군사기지 및 군 시설관련 구분과 관련법 내용
Table 1.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related information, classification and applicable law

군사시설 보호관련법(5)	해군기지법(1950), 방어해면법(1950), 군용전기통신법(1961년), 군용항공기지법(1970), 군사시설보호법(1972)
기지이전 관련법(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199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1993년)
군용시설 설치 관련법(4)	토지수용법(1962), 국토이용관리법(1972),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특별법(197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2002)
주한미군시설 관련법(2)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1954), SOFA이행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1967)

2.2.2. 군사보호구역 및 행위규제 제한

표 2. 군사보호구역
Table 2. Military reserves

구분	내용
통제 보호 구역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 MDL로부터 10km이내(민통선) 그 외 지역 : 군사시설 외곽 300미터 이내
제한 보호 구역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 MDL이남 20km ☐ 민간인 통제선은 MDL이남 10km 범위 그 외 지역 :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표 3. 행위규제 제한
Table 3. Regulatory action limit

구분	내용
통제 보호 구역 규제 완화	주택의 신축만 금지 (기타 행위는 협의 하 가능) 출입통제절차 간소화 - 장기출입자(영농)신청기관 현실화 : 시·군·구청장 ☐ 읍·면·동장 - 일일출입절차 간소화 : 지체 없이 현장에서 출입
제한 보호 구역 규제 완화	모든 건축행위는 협의 하 가능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협의 실시 ☐ 신고대상 건축물은 군협의 불필요 - 농림지역 등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 폭발물 관련 주변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 기존 주택의 경우 200㎡이하, 높이 9m 이하의 증축, 개축, 이전 ☐ 신축, 재축도 허용

III. 군 부동산 관리 실태

3.1. 주요국 군용지 점유 비교

국토에 대한 군용지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 대비 일본은 1.03배, 미국은 무려 72배, 독일은 2.6배, 영국은 1.8배로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국토면적은 우리나라가 1.36%로 가장 높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3.2. 군 부동산 관리실태

토지는 필지수로 보면 경기도(7만 3,357), 강원도(4만 2,825), 충청북도(1만 3,002), 경상북도(1만 2,732),

충청남도(1만 2,250) 등의 순이다. 또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울산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4,000 필지수가 있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40만 3,156㎡), 강원도(27만 1,547㎡), 경상남도(7만 7,262㎡), 충청남도(7만 5,323㎡), 경상북도(7만 2,674㎡) 순서다. 참고로 건물을 동수로 보면 경기도(3만 4,191), 강원도(2만 7,149), 충청남도(4,899), 경상북도(4,412), 경상남도(4,213) 순이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7,551㎡), 강원도(4,937㎡), 경상남도(2,150㎡, 충청남도(1,974㎡), 서울특별시(1,810㎡)이다

국방·군사시설 중 토지는 총 19만 9,887필지에 11억 8,764만㎡이다. 필지수로 보면 전(4만 6,306), 임야(4만 2,406), 잡종지(3만 5,654), 답(3만 3,342), 도로(2만 1,324) 순이다. 면적은 임야(75만 9,671㎡), 잡종지(21만 97㎡), 전(8만 8,010㎡), 답(6만 3,662㎡), 대(2만 3,509㎡)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군 보유 토지는 육군이 전체의 69%인 927.4km², 공군이 11.0%인 148.5km², 해군이 10.6%인 143.1km², 국방부 직할부대가 8.4%인 113.4km²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육군이 보유한 927.4km² 토지를 보면 훈련장이 54%인 500.8km²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부지가 22%인 204.0km², 저장시설 및 기타는 33%인 306.0km²를 점유하고 있다. 참고로 2005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총 78,178동 35%인 27,185동이 저장시설이고, 다음은 주거 및 복지시설이 24%인 19,007동, 행정시설이 6%로 4,801동, 교육시설이 3%로 2,115동이고, 기타는 32%인 25,070동으로 조사되었다.

행정구역별로는 총 2,735개 부대 중 서울 및 경기도권이 46.5%인 1,271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끊임없이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강원·충청권으로 37.8%인 1,034개 부대, 마지막으로 경상·전라권에는 15.7%인 430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지 및 부대이전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에 자세하게 포함되지 않아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고, 부대이전을 할 때에도 미래를 고려한 공사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현실만 고려하여 공사를 하고 있어 향후에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3.3. 군사시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손실

서울시에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의 가치는 47조 7,437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군사보호구역 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시가 가치 면에서는 26.8%를 점하고 있었다. 이어서 경기도는 45.8%인 81조 5,163억 원, 인천광역시 19.3%인 34조 4,138억 원 이었다.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2.2%를 점하고 있는 강원도는 5조 8,782억 원으로 3.3%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에 비해 그 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지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2008년 남북포럼 제2차 학술토론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는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1973-2008년까지 총생산 손실액이 1,277조 3,389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는 5조 7,18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막대한 금액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지역주민과 군부대와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기북부의 2006년-2008년, 3년간 지역주민들이 군협의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총 17,063건이 접수되어, 그 중 54.04%인 9,364건이 동의처리되었고, 18.19%인 3,103건이 조건부 동의 처리된 반면 19.13%인 3,265건은 부동이 처리되었으며, 이외에도 회송, 취하 등 처리되어 지역주민들이 군부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경기·강원 북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토로하는 등 불만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입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2005년 13,954건의 군사협의 요청을 접수하여 6,640(47.6%)건을 동의처리하고, 4,268(30.6%)건은 조건부로 동의하였으며, 3,046(21.8%)건은 부동의 하였다.

3.4. 소결론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군 부동산 관리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1. 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이 관리문제도 수시로 지역 주민들과의 마

- 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국토발전 계획 등 각종 정부계획 수립을 할 때 중요성을 알지 못해 대부분이 최초 계획단계에 미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부동산 전문가의 부재 및 관련부서의 작은 인원교체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었다.
 3. 군 보유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또한 군부대 이전 등 각종사업 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해결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4. 민·군이 공통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미흡으로 군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도 미흡하였다.
 5.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와 강원도 북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에 대한 불만이 집중되고 있었다.
 6. 군 부동산 자산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내용을 정보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4.1.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관리방향 재설정으로 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정확한 현장실사로 군 작전에 필요한 지역에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군부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계를 지도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해당 행정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즉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1/25,000이하의 지형도에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적고시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계를 표시하여 행정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확하게 측량을 하여 공부에 기록하는 등 행정기관에서는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위해 해당 군부대에 작성성 검토를 요청하면 일부는 결과가 늦게 통보되어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군사 작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분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위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군부대와 지역주민들 간의 마찰이 발생하기 보다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4.2. 정부에서 국토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 할 부동산 전문가 전진 배치

최근 도시외곽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시설이 도시의 확장으로 각종 지역계획과 상호 중첩이 되어 민·군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물 고도제한과 재산권 관련 민원, 소음, 오·폐수 등의 환경문제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전하는 군사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 이유는 군부대시설에 관한 각종 계획이 국토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사전에 군사시설이전에 관한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그에 필요한 용지가 미리 시·군·구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켜두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군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가장 시급함을 알 수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여러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자문이나 설명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있다. 우리 군도 이제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의 부동산을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자문기구나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진배치 시켜야 할 것이다.

4.3. 미래 군사도시개발(Military Town)을 고려한 군 부동산 자산 운용

향후 군부대 이전사업을 할 때에는 핵심, 보조,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설을 배치한다면 운영유지 예산의 절약과 민원요구의 감소, 지휘통제 및 부대관리 용이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거시설은 도시생활권에 근접하여 건립하고 단계적으로는 소규모 단지를 통·폐합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병행하며, 대규모 단지화로 발전하고 독신 간

부속소는 병영시설과 연계하여 현대화를 추진하며 노후 협소관사는 개·보수 후 독신 간부숙소로 전환하고, 복지시설은 발전대상지역과 지방자치단체 도시발전계획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지역단위 종합 타운화를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4. 군사보호구역의 연구 활동 지속 실시하여 군·민 갈등 요소 감소

각종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군부대가 인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보호구역이 설정 되었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국방부와 관련부대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5.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접경주민 사기 진작 필요

그동안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필요하여 제시되었던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광역계획 수립,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접경지역지원사업의 권한과 책무 강화와 접경지역지원 사업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물류개선을 위한 SOC 우선공급,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지정, 전원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산업육성을 위한 국고보조의 법적 의무화, 기업투자과 공장설립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가칭 '접경지역 특별기금' 조성, 고용보조금의 지원범위 확대,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외국 인력의 원활한 공급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지원 등 여러 관련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소명감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6. 군 보유 부동산 자산을 정보화관리로 대민 업무 지원용이

군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장은 대장상의 내용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군에서 별도로 자료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 도시계획자료 등과 연계되도록 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향후 대민 민원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V. 결 론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전 국토의 1.36%를 차지하고 있는 군 부동산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었다. 향후 군 발전을 위해서도 차제에 이 부분은 정리되어야 한다.

첫째 군 보유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의 관리방향을 현 실정에 맞게 재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국방부에서는 정부에서 각종 국토개발 계획수립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시켜야 한다. 계획수립 후에 뒤 늦게 대응하는 자세는 사라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부동산 전문 자문단'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래 군사도시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문제는 꾸준히 연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갈등과 마찰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안보상황논리에 의해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군부대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 부동산 자산 및 민과 갈등 내용 등 정보화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군 특성상 자료조사의 어려움을 새삼 느꼈다. 최근 자료 획득이 어려워 다소 시기가 지난 자료로 분석하여 정확한 분석이 다소 미흡함을 인정한다. 그리고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이 방대하여 육군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국방부 직할부대,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타군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육군을 포함한 전 군의 보유 부동산 자료를 참고로 실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면 효율적인 방안 제시가 가능한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강한구, 정창만, 권오봉,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피해보상방안연구”, 국방연구원, pp. 33-83, 2005.
- [2] 강한구, 강소영,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자 06-2349, pp. 28-34, 2006.
- [3] 국회예산정책처,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평가, 발간등록번호(31-970022-000587-01), pp. 1-51, 2009.
- [4] 김영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설치가 정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국토연구원, 국토논단, pp. 104-117, 2006.
- [5] 김석봉, 백승민, 이병인, “미래 육군의 시설 발전 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투발전,, pp. 619-792, 2006.
- [6] 김석봉,이필재, “군사시설의 Military Town화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육군 사단급 부대를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학교육학회, 한국군사학논집, 제64집 2권, pp. 85-92, 8. 2008.
- [7] 이귀택, 민규식,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국유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6권, 5호, pp. 739-748, 2011.
- [8] 신광식,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부동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6권, 4호, pp. 573-580, 2011.
- [9] 심제정, “군사시설 관련 갈등 해결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25권, 2호(통권 제 84호), pp. 230-268, 2009.
- [10] 오관치, 차영구, 한광수, 여현철, 김미영,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9-30, pp. 12-14, 2009.
- [11] 원영수,김동현, “부동산신탁회사 운용상 개선방안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3권, 1호, pp. 52-53, 2009.
- [12] 임중무, 한반도 통일 후 군용지 및 군사시설 관리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 p. 14, 8. 2008.
- [13] 임중무,강 남훈,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5호, pp. 749-756, 2011.

- [14] 황금희, 신기동, 장세진, “접경지역지원법의 경기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7-10, pp. 3-11, 8. 2007.

저자 소개



신광식(Kwang-Shig Shin)

1985년 2월 사관학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사)

1990년 8월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이론행정 졸업(행정학 석사)

2010년 8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박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주)유니테크 상무이사.

※ 관심분야 : 부동산중개, 부동산보상, 부동산투자, 부동산정책, 부동산유통



김동현(Dong-Hyun Kim)

교신저자

2002년 이학박사(컴퓨터응용)

2006년 행정학석사(부동산학)

2010년 부동산학 박사(부동산투자)

1996년~현재 청암대학교 교수

벤처정보연구소장, 정보처리 기술지도사, 건설정보센터 이사

※ 관심분야 : 부동산조사분석,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정보, U-city